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4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인요한 · 권영세 · 조정훈

장동혁 • 권영진 • 맹성규

김 건 · 김영배 · 김성원

박준태 • 윤후덕 • 위성락

홍기원 • 이재정 • 차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융자로 인한 채권은 「국가 채권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그 사업의 존속 여부 또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됨에도, 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을 국가의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점이 있음(「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하였으나 해당 사업의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위험성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 업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한편, 통일부고시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협의회"를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의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 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기금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구상채권을 포함한다)의 회수에 갈음하여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 1. 채권의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 기금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가액산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금을 사용한 자"를 "기금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금을 사용하는 자"를 "기금사용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u>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① 통
	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
	라 한다)의 기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u>있다.</u>
	1. 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
	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 성을 제고하거나 기금의 손실 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구상채권을 포함한다)의 회수에 갈음하여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 획을, <u>기금을 사용한 자</u>는 기금 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u>기금을 사용</u> 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 1. 채권의 회수비용이 회수예상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 기금
 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 식 또는 출자증권의 가액산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_
	_
<u>기금사용자</u>	
②기금사용지	}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	
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